

# 윤리강령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

이 윤리 강령 (이하 “강령”이라한다)은 대흥아이비엔 주식회사(이하 “대흥아이비엔”이라 한다)의 윤리현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대상 】

이 강령은 대흥아이비엔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2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 제 3 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1. 임직원은 대흥아이비엔 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2.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대흥아이비엔의 명예를 유지•발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 제 4 조【 사명 완수 】

임직원은 대흥아이비엔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대흥아이비엔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 제 5 조【 자기 계발 】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 6조【 공정한 직무 수행 】**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자기 또는 대홍아이비엔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조【 이해충돌 회피 】**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홍아이비엔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대홍아이비엔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대홍아이비엔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 8조【 부당이득 수수금지등 】**

1.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및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9조【 공•사사 구분 】**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대홍아이비엔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대홍아이비엔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대홍아이비엔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임직원은 대홍아이비엔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 10조【 임직원 상호관계 】**

1.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1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

1.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진흥원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4. 대흥아이비엔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5. 임직원은 기관 업무관련 보안·비밀·기밀 사항을 가지고 자기 또는 타인의 영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 제 3 장 고 객 존 중

#### 제 12 조【 고객존중 】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제 13조【 고객만족 】

1.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정책지원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 한다.
2.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 14 조【 고객의 이익보호】**

1.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대홍아이비엔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 4 장 경쟁사 및 협력사에 대한 윤리**

**제 15 조【 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 외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제 16 조【 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 17 조【 협력사와의 상호신뢰】**

1. 협력사와는 공존공영의 원칙아래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거래에 임한다.
2. 협력사 선정 시에는 최상의 경영 파트너를 선택하기 위해 관련 요소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고려한다.
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강요행위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4.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가능한 모든 지원을 통해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제 5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 18 조【 임직원 존중】**

대홍아이비엔은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여,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 · 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 19 조【공정한 대우】**

대홍아이비엔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 20 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대홍아이비엔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 21 조【삶의 질 향상】**

1. 대홍아이비엔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대홍아이비엔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 6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 22 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1.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조직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대홍아이비엔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3 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1. 대홍아이비엔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2. 대홍아이비엔은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소속단체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24 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25 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6 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27 조【국제경영규범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 제 7 장 보 칙

**제 28 조【준수의무와 책임】**

- 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 29 조【강령의 운영】**

- 대표이사는 조직의 발전상황과 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 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 8 장 부 칙

이 강령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